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수정안 대비표

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|--|
| 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<u>2008년 7월 1일부터</u> 시행한다.</p> | 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부터</u> 시행한다.</p> |

※ 여타부분은 개정안과 같음